

『구미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9년 8월 21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9년 8월 24일

라. 상정일자 : 2009년 9월 7일

제14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
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구미보건소장 이 원 경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,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건강도시 구미계획을 수립하고, 건강도시정책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건강한 도시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

다. 주요내용

○ 건강도시사업의 기본원칙(제1조 ~ 제6조)

-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
-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
-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의 습관화
- 생애주기별, 생활터별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
-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 강화

○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설치

- 위원회 기능(제7조)
 - 건강도시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 - 건강도시사업 방향제시 및 사업발굴·제안에 관한 사항 등
- 위원회 구성(제8조)
 -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
- 위원회 임기 및 회의개최(제9조 ~ 제11조)

라. 참고사항

○ 「국민건강증진법」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배 정 미

○ 본 조례안은

- 구미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종합적이고

계획적인 사업을 추진하고, 건강도시정책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문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 임

○ 주요 내용은

-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
-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도시정책에 관한 자문 또는 심의기능을 수행할 “건강도시운영 위원회”를 20인 이내로 구성하고
-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음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모든 시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, 건강도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건강한 도시환경을 구축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